

2023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 순 서 -

I . 202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1
1. 편성 방향	1
2. 총지출 규모	1
3. 주요사업 편성내용	3
II . 202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	12
1. 예산	12
2. 고용보험기금	34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7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0
5. 임금채권보장기금	67
6. 근로복지진흥기금	71

I. 202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1. 편성 방향

◇ '23년 예산 규모는 34조 9,505억원 ('22년 본예산 대비 △16,215억원, △4.4%)

* <'20> 30.5조원 → <'21> 35.6조원 → <'22> 36.6조원 → <'23> 35.0조원

☞ 한시지출 정상화, 유사·중복 조정, 제도 개선 등 투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

- ❶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
- ❷ 저소득·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❸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부문 중심 집중 지원
- ❹ 노사가 상생하는 공정 노동시장 구축 지원

2. 총지출 규모

□ 총지출은 34조 9,505억원, '22년 본예산 대비 1조 6,215억원(△4.4%) 감소

○ 일반·특별회계는 6조 6,741억원으로, '22년 대비 4,252억원(△6.0%) 감소

○ 기금은 28조 2,765억원으로, '22년 대비 1조 1,962억원(△4.1%) 감소

* (고용보험기금) 16조 9,107억원, '22년 대비 1조 9,298억원 감소(△10.2%)

(산재보험기금) 9조 6,406억원, '22년 대비 7,561억원 증가(+8.5%)

< '23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억원, %)

회계·기금별	'22년 예산		'23년 예산 (B)	'22년 대비 (B-A)	
	본예산(A)	추경(+)		(B-A)	%
▪ 총지출(a+b)	365,720	18,218	349,505	△16,215	△4.4
- 예산지출(a)	70,993	21,750	66,741	△4,252	△6.0
· 일반회계	67,526	21,751	59,193	△8,333	△12.3
· 특별회계*	3,467	△1	7,548	4,081	117.7
- 기금지출(b)	294,727	△3,532	282,765	△11,962	△4.1
· 고용보험	188,405	△3,532	169,107	△19,298	△10.2
· 산재보험	88,844	-	96,406	7,561	8.5
· 장애인	7,663	-	8,478	815	10.6
· 임금채권	7,008	-	6,357	△652	△9.3
· 근로복지	2,806	-	2,417	△389	△13.9

※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 고등교육특별회계 이관 4건(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관련) 포함

□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23조 234억원으로, '22년 대비 6.0% (△1조 4,691억원) 감소

○ 직접일자리는 382억원으로 '22년 대비 36억원(△8.6%) 감소

* 주요감액: 신중년 사회공헌(291억원 → 257억원, △34억원)

○ 직업훈련은 2조 4,792억원으로 '22년 대비 2,775억원(12.6%) 증가

* 주요증액: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3,248억원 → 4,163억원, +915억원)
반도체학과 신설(+350억원)

○ 고용서비스는 1조 6,678억원으로 '22년 대비 1,282억원(△7.1%) 감소

* 주요감액: 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13,795억원 → 11,439억원, △2,356억원)

○ 고용장려금은 4조 6,786억원으로 '22년 대비 1조 3,563억원(△22.5%) 감소

* 주요감액: 청년추가고용장려금(9,952억원 → 2,294억원, △7,659억원)

○ 창업지원은 289억원으로 '22년 대비 30억원(△9.4%) 감소

* 주요감액: 사회적기업가육성(319억원 → 289억원, △30억원)

○ 실업소득지원은 13조 3,938억원으로 '22년 대비 3,380억원(△2.5%) 감소

* 주요감액: 구직급여(115,339억원 → 111,839억원, △3,499억원) 등

○ 지원고용은 7,369억원으로 '22년 대비 825억원(12.6%) 증가

* 주요증액: 장애인고용장려금(2,624억원 → 2,977억원, +353억원)

<고용노동부 '23년 일자리 사업 예산>

(억원, %)

구 분	'22년 예산 (A)	'23년 예산 (B)	'22년 대비 (B-A)	%
합 계	244,925	230,234	△14,691	△6.0
▪ 직접일자리	418	382	△36	△8.6
▪ 직업훈련	22,017	24,792	2,775	12.6
▪ 고용서비스	17,960	16,678	△1,282	△7.1
▪ 고용장려금	60,349	46,786	△13,563	△22.5
▪ 창업지원	319	289	△30	△9.4
▪ 실업소득유지지원	137,318	133,938	△3,380	△2.5
▪ 지원고용및재활(장애인)	6,544	7,369	825	12.6

3. 주요사업 편성내용

1.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 **(디지털·신기술)**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폴리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추진**
 -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 3,248억, 2.9만명 → <'23> 4,163억, 3.7만명
 -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 <'22> 62억, 1.2천명 → <'23> 77억, 1.5천명
- **(반도체)**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다수 중소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센터 확대**
 -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반도체학과 신설(+10개, 350억)
 - ✓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반도체 + 유관 신기술 포함)
: 대중소공동훈련센터(5개, 50억), 일학습공동훈련센터(10개, 100억)

□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기업발굴 - 맞춤형 훈련 - 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수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제도 도입
 -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 <'23> 71억, 15개소
- **(현장맞춤형 훈련)**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 지원**
 -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2> 82억, 1,025개소 → <'23> 134억, 1,920개소
- **(기업직업훈련카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 ✓ 기업직업훈련카드 : <'23> 307억원, 1.3만개소

□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개편**

- 폴리텍·한기대 등 공공직업훈련기관들의 훈련시설 리모델링,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훈련생들의 편의성 제고, 집중훈련 지원**
 -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22> 2,241억원 → <'23> 2,787억원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 <'22> 403억원 → <'23> 500억원

□ **구인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핵심 주력산업의 경우 구인난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광역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신설

✓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 17억원, 2개소

↳ 국가 중요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밀착 구인 애로 해소 지원

- **(지역·산업 특화지원)** 중앙의 일자리사업과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별로 지원범위·수준 등을 우대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폭 확충

✓ 지역혁신프로젝트 : 〈'22〉 294억 → 〈'23〉 650억

□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 **(통합 네트워크 구축)**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 기관이 집적·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 180억원, 4개소

- **(패키지형 서비스)** 기업·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 - 컨설팅 - 일자리 매칭을 일괄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신설

✓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 〈'23〉 24억원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 〈'23〉 24억원

- **(인적역량 강화)**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 고용노동교육사업 : 〈'22〉 54억 → 〈'23〉 78억

2.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안전망**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보수 230 → 260만원 미만)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 →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22〉 1조 466억 → 〈'23〉 1조 764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 공고화 + 조기취업 유인 강화**

- * (구직촉진수당) <'22> 1인당 50만원 → <'23>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 (조기취업성공수당) <'22> IAP수립 후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23> IAP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 <'22> 1조 4,965억 → <'23> 1조 2,255억

○ **(플랫폼종사자) 플랫폼 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 확대**

- ✓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 : <'22> 19억 → <'23> 20억
-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 <'23> 160억(16만명)

□ **모성보호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확대,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 지원**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2> 417억(0.8만명) → <'23> 937억(1.8만명)
- ✓ 육아휴직급여 : <'22> 1조 5,807억(12.8만명) → <'23> 1조 6,964억(13.2만명)

○ **(가사서비스) 사회보험료 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 제고 → 체계적 품질관리 가능**

-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2> 17억(5천명) → <'23> 53억(1.3만명)
-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23> 14억

□ **청년 타겟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 **(맞춤형 서비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로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제공,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23> 86억(3만명) ✓ 청년도전지원 : <'22> 76억 → <'23> 408억

○ **(일경험 개편)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체계화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 추진**

- ✓ 청년일경험지원: <'22> 50억(1만명) → <'23> 553억(2만명)
- ✓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22> 170억 → <'23> 251억

□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고용촉진) 고령자 고용증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 ✓ 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6천명) → <'23> 558억(5.3만명)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3천명) → <'23> 268억(8.2천명)

- **(취업지원)** 중장년 내일센터 - 산업 협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 신설(360개 기업)

✓ 중장년층 취업지원 : '22 213억 → '23 223억

- **(노후소득)**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영 : '22 64억 → '23 133억

↳ ▲(지원대상)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 장애인 기업 - 고용유인 제고, 장애인 근로자 - 취업으로 해소

-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인턴제 단가 인상 등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 '22 2,624억 → '23 2,977억

↳ (지원수준(만원)) 男·경증 30→35, 女·경증 45→50, 男·중증 60→70, 女·중증 80→90

✓ 장애인인턴제 : '22 32억(월 최대 80만원) → '23 46억(월 최대 100만원)

- **(취업으로 해소)**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22 2,047억(1만명) → '23 2,270억(+500명)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 '22 26억(3.9천명) → '23 69억(15천명)

↳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3.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 산재사고 취약부문 집중 관리

- **(위험요인 개선)**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 강화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22 4,509억 → '23 5,070억

- **(원하청 상생)**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개편

✓ 공생협력프로그램 : '22 5억(평가·기술지원) → '23 99억(협력사 500개소 대상 재정지원)

- **(스마트 안전기술)**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영세사업장 보급·확산

✓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 '23 250억(2,890대)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등

- **(유해환경 개선)**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기존 30인 미만)
✓ 유해작업환경개선 : 〈'22〉 793억(74천개소, 53만명) → 〈'23〉 822억(88천개소, 67만명)
- **(건강보호 인프라)**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1개소)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1개소) 증설
✓ 휴게시설 : 〈'23〉 223억, 6,588개 사업장
✓ 근로자건강센터 : 〈'22〉 204억(건강센터분소 21개, 트라우마 13개) → 〈'23〉 208억(각 1개소 증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22〉 58억(2천개소) → 〈'23〉 382억(16천개소)

4.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 지원

- **(임금 인프라)**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설계,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22〉 7.7억 → 〈'23〉 24.3억
- **(현장 컨설팅)**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지원
✓ 일터혁신 지원 : 〈'22〉 257억(2,836건) → 〈'23〉 280억(3,100건)

□ 공정 노동시장 조성

- **(공정채용)**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20개), 기업 컨설팅(150개), 공감채용 가이드북 배포 등 지원 → 공정한 채용 관행 형성 지원
✓ 공정채용인프라 구축 : 〈'22〉 13억 → 〈'23〉 38억
- **(노동권 보호)** 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 확대(◦ 물량 1.9만건 → 4만건, ◦ 대상 ~29세 → ~34세)
 - 아울러,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 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 지속- ✓ 근로조건개선지원 : 〈'22〉 158억 → 〈'23〉 167억

참고 1

주요 신규·완료사업 현황

1. 신규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23년 예산	비고
합계	46	-
■ 일반회계	46	-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46	◦ 중대재해수사 과학화 및 감독관 직무교육 등

2. 완료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22년 예산	비고
합계	35	
■ 일반회계	35	
• 일자리위원회운영	35	

참고 2

주요 증액 사업

○ '22년 대비 200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증액된 사업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22년 예산 (A)	'23년 예산 (B)	증 감	
			(B-A)	%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438	714	276	63.1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7	43	36	521.0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117	407	289	246.8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69	118	50	72.2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428	8,891	3,463	63.8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566	1,263	697	123.2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38	61	23	59.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1	76	55	261.9
내일배움카드(일반)	4,263	5,188	925	21.7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42	75	33	78.6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241	2,787	546	24.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466	10,764	298	2.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	156	28	21.9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	76	100	24	31.8
노동위원회청사관리	20	26	6	29.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744	3,030	286	10.4
내일배움카드(고보)	7,983	8,873	890	11.2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410	535	125	30.4
조기재취업수당	3,656	3,867	210	5.7
자영업자 실업급여	89	112	24	26.5
모성보호육아지원	19,333	21,006	1,673	8.7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264	869	605	229.2
장애인고용장려금	2,624	2,977	353	13.5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26	69	43	166.2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364	449	84	23.2
채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307	483	176	57.4
산재보험급여	71,463	77,923	6,460	9.0
산재보험 시설건립	71	177	106	147.8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10	150	40	36.5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509	5,070	561	12.4
업종별재해예방	914	1,315	401	43.9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59	88	29	48.8
퇴직연금 사업운영	92	156	64	70.0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38	48	10	25.1

참고 3

재정 효율화 추진사업

○ '22년 대비 200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감액된 사업

<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22년 예산 (A)	'23년 예산 (B)	증 감	
			(B-A)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고보)	13,099	6,403	△6,696	△51.1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	189	52	△137	△72.5
일자리안정자금지원	4,635	60	△4,576	△98.7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4,965	12,255	△2,710	△18.1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155	92	△63	△40.9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20	15	△5	△26.1
공무직위원회 운영	9	2	△7	△79.5
고용유지지원금	5,981	1,974	△4,007	△67.0
고용창출장려금	6,869	1,395	△5,474	△79.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52	2,294	△7,659	△77.0
고용장려금(융자)	55	0	△54	△99.7
고용서비스모니터링	89	53	△36	△41.2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3	4	△10	△71.4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39	57	△182	△76.2
구직급여	115,339	111,839	△3,499	△3.0
산재병원지원	548	324	△224	△40.8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90	3	△87	△96.6
대지급금지급	6,431	5,592	△839	△13.1
대지급금조력지원	1	1	△0	△44.7
생활안정자금(융자)	1,991	1,500	△491	△24.7

참고 4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개관 및 적립금

(‘22.12월 기준)

구 분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 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 치 목 적		실직자 생활안정, 고용촉진	업무상재해보상	임금채불노동자 생활안정	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설 치 근 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 초 시 행		1995년	1964년	1998년	1994년	1991년
운영 기관	징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급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적용사업장		1인 이상 (261만 개소)	1인 이상 (293만 개소)	좌동	-	부담금: 100인 이상 장려금: 장애인 2명 (산고용1명 이상 고용)
보험가입자 (부담자)		피보험자 (1,450만명) 사업장 (261만 개소)	사업주	좌동	-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민간 31%, 공공 36%)
피보험자 (수혜자)		노동자(1,450만명)	노동자 (1,992만명)	좌동	저소득 근로자 등	사업주, 장애인
보 험 료		보수총액 × 보험료율	좌동	좌동	복권 수익금 분배 비율	부담기초액(고시) × 가산율 × 고용미달인원
보험 료율	산출 방법	30/1000 내에서 정함	보험급여 지급률 (3년 보험급여 지출액 / 3년 보수총액) + 추가지출률 + 부가보험료율	2/1,000 내에서 정함	복권수익금 × 1.86%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의 60% 이상
	계정별 요율	실업급여계정 18%(노사 각 50%) <예술인·특고 16%>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평균 1.53% (0.70% ~ 18.60%)	0.06%	복권수익금 × 1.86%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에 고용률별로 가산 <단 미고용시 최저 임금 부담>
'22.사업비		190,126억원	84,658억원	7,008억원	3,189억원	7,763억원
'21.연말적립금		56,487억원	222,222억원	7,305억원	1,430억원	11,008억원
'21.적립금비율		실업급여계정 0.3 고안·직능계정 0.2	3.7	1.3	0.4	1.4
법정적립금비율		실업급여 1.5~2배 고용안정·직능 1~1.5배	1.0	1.0	-	-

Ⅱ. 202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

- ◇ 총지출 34조 9,505억원('22년 대비 △16,215억원, △4.4%)
- 예산은 6조 6,741억원('22년 대비 △4,252억원, △6.0%)
 - 기금운용계획은 28조 2,764억원('22년 대비 △11,963억원, △4.1%)

1. 예산

1) 세입 및 세출 총괄

□ 세 입

- 수입은 2,504억원으로 '22년 대비 1,094억원(77.5%) 증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2예산 (A)	'23예산 (B)	증감(B-A)	%
합 계	141,061	250,447	109,386	77.5
○ 일반회계	131,061	233,946	102,885	78.5
· 기타재산수입 및 이자수입	776	1,217	441	56.8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42,998	44,666	1,668	3.9
· 변상금 및 위약금	10	10	-	-
· 가산금	264	264	-	-
· 기타경상이전수입	87,000	187,640	100,640	115.7
· 기타수입	13	149	136	1,046.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000	16,501	6,501	65.0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0,000	16,501	6,501	65.0

□ 세 출

- 지출은 6조 6,741억원으로 '22년 대비 4,252억원(△6.0%) 감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2예산 (A)	'23예산 (B)	증감(B-A)	%
합 계	7,099,325	6,674,114	△425,211	△6.0
• 일반회계	6,752,598	5,919,305	△833,293	△12.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0,955	89,132	△1,823	△2.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5,772	300,248	44,476	17.4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65,429	365,429	순증

2) 주요 사업별 예산

① 노동시장정책 지원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지역고용사업의 평가 및 환류
-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예상되는 고용효과 분석
- ❖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43억원

- 고용정책심의회 운영, 자치단체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주요 일자리정책 추진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지역고용사업 평가

○ 고용영향평가사업: 34억원

-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고용영향평가 실시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475억원

-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설계·제안하고, 고용부가 공모로 선정·지원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추진,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범위·수준·내용 등 우대로 구인난 해소 집중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2년 종료): 60억원

- 사후 정산 추가지급 및 과오지급금 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최소 예산 편성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601,091	161,156	△ 439,935	△ 73.2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692	4,297	3,605	520.9
○ 고용영향평가사업	4,157	3,371	△ 786	△ 18.9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32,704	147,504	14,800	11.2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463,538	5,984	△ 457,554	△ 98.7

② 고용서비스 사업

- ❖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도화
- ❖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 ❖ 노동시장 변동과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고도화

○ 고용센터인력지원: 923억원

-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상담인력인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 지원

* 공무원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 직업상담원 200명*3개월

○ 직업안정기관운영: 714억원

- 취업지원,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운영비 및 국가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반비용 지원

*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4개소(180억원),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 2개소(17억원) 등

○ 취약계층취업촉진: 117억원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취업촉진 도모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조 764억원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22년)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23년) 260만원 미만

○ 실업크레딧지원: 347억원

- 일정 소득* 이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이하

** 일반회계 25%, 고보기금 25%(고용부), 국민연금기금 25%(복지부), 자부담 2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조 2,255억원

- (Ⅰ 유형: 1조 488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저소득 구직자 등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지원

* 지원 규모: ('22년) 50만명 → ('23년) 40만명(△10만명)

- (Ⅱ 유형: 951억원)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 지원 규모: ('22년) 10만명 → ('23년) 7만명(△3만명)

- (일경험프로그램: 804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지원 규모: ('22년) 25만명(체험형 0.75만, 인턴형 1.75만) → ('23년) 훈련연계형 1.7만명(△0.8만명)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2,714,772	2,511,966	△202,806	△7.5
○ 고용센터인력지원	85,755	92,288	6,533	7.6
○ 직업안정기관운영	43,795	71,425	27,630	63.1
○ 취약계층취업촉진	11,849	11,654	△195	△1.6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46,594	1,076,405	29,811	2.8
○ 실업크레딧지원(일반)	30,306	34,739	4,433	14.6
○ 국민취업지원제도	1,496,473	1,225,455	△271,018	△18.1

③ 고용지원 사업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고용24 구축 등을 통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지원
- ❖ 노동시장 현황 및 고용노동현안 이슈의 신속한 파악을 통한 고용 정책 수립 지원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78억원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매칭시스템을 구축, 전 생애에 걸쳐 상황별·고용형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21억원), ▲머신러닝 기반의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5억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일반운영비(38억원), ▲데이터시전 구축을 위한 온톨로지센터 운영(14억원)

○ 디지털기반의 고용서비스인프라 지원: 52억원

- 고용서비스 채널을 통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개인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 직원의 스마트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고용센터 “고용24” 구축
 - * ▲고용24 구축(25억원), ▲고용행정통합포털 구축(13억원), ▲일반운영비(14억원)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76억원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컨설팅 지원
 -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53억원), ▲전산시스템 운영(14억원), ▲컨설팅 등 제도운영(9억원)

○ 고용노동통계조사: 256억원

-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6종(부가조사 포함 8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각종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 지역 주도 일자리 확산을 위한 통계 기반 강화
 - * (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 세부산업 고용통계를 생산하여 지역주도형 일자리 추진 지원, 고용위기지역 선제적 모니터링, 산업별 구조조정 대응 등 정책 지원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인력수요 등을 파악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지역별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 강화 등 일자리 통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 조사확대(‘20년 2종)에 따른 조사인력 사무공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단계적·연차적(‘20년~’23년) 통계 인프라 확충

○ 고용동향조사분석: 59억원

- 대상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등 고용패널 자료 생산, 고용동향 심층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43억원)
- 빅데이터 생산 분석 및 빅데이터센터 운영(10억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통계 및 해외사례 분석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연구(7억원)

○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392억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511명, 338억원) 및 기관운영비(54억원)를 지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구축: 118억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를 구축, 국가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공사비 101억, 감리비·시설부대비 등 17억)

* 국가기반시설 : 고용보험전산망

정보통신기반시설 : 고용보험전산망, 고용안정전산망,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108,613	103,258	△ 5,355	△ 4.9
○ 일자리 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8,431	7,853	△ 578	△ 6.9
○ 디지털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지원(정보화)	18,942	5,218	△ 13,724	△ 72.5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2,097	7,589	5,492	261.9
○ 고용동향조사분석	6,822	5,939	△ 883	△ 12.9
○ 고용노동통계조사	24,177	25,599	1,422	5.9
○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41,282	39,241	△ 2,041	△ 4.9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6,862	11,819	4,957	72.2

4 청년고용 사업

- ❖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
- ❖ 청년들의 체계적인 취업진로 및 일경험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적극지원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구, 청년센터 운영): 407억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청년들에게 각종 노동시장 정보 및 경력설계·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15억원), 청년도약보장패키지(10개소, 86억원)
-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여 청년의견을 반영추진
 - * 2030 자문단 운영 (0.7억원)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8,891억원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23년 신규 지원 9만명)
 - * ('22년) 月80만원×12개월 지급 → ('23)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4,296억원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 지원,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지원(신규 2만명)
 - * (지원대상)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 * (만기금) 1,200만원 = 청년 400만원+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청년지원 200+기업지원 200)
 - * ('23) 21.2만명(신규 2만+지속 19.2만)

○ 한국잡월드운영: 213억원

- 한국잡월드 운영을 위한 출연금(총지출 330억원-자체수입 117억원)
 - * (사업비) 257억원(전시체험콘텐츠 16억, 전시체험관 193억, 숙련기술체험관 37억, 정보화시스템 6억, 기타 6억), 기타 운영 73억 등

○ 해외취업지원: 468억원

- 해외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알선 실시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 K-Move 스쿨: ('22년) 3,200명 → ('23년) 2,100명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22년) 690명 → ('23년) 600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22년) 4,100명 → ('23년) 3,800명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263억원

-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인 청년층에 대한 진로지도, 일경험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관련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청년 취업경쟁력 제고

* 청년일경험지원 19,700명,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청년도전지원사업 8,000명 등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61억원

- (직업정보제공) 미래직업세계 연구를 통한 신직업 발굴 및 육성, 심층적인 직업정보(한국직업정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등) 개발·보급
- (직업지도) 전국민의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심리검사·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현장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분석 등 청년정책 실행지원

* 국정과제(52-1, 90-2) 연계, 직업정보제공 13.6억원, 직업지도 47.2억원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1,565,514	1,592,839	27,325	1.7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11,728	40,667	28,939	246.8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42,820	889,078	346,258	63.8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875,468	429,586	△445,882	△50.9
○ 한국잡월드운영	20,042	21,330	1,288	6.4
○ 해외취업지원	55,074	46,786	△8,288	△15.0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56,571	126,293	69,722	123.2
○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3,811	6,082	2,271	59.6

⑤ 여성·장년 및 사회적기업 사업

- ❖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신중년 대상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및 신중년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성장지원, 재정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5억원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지원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 운영 등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6억원(총 지원인원 10,368명)

- 임신·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지원인원: ('22) 8,484명 → ('23) 10,368명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20억원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257억원(지원인원 3,000명)

- 신중년이 퇴직 이후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에서 경험 후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장년층취업지원: 223억원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에게 생애설계교육, 전직지원,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4만명,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400개소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일반): 246억원

-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분야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비·시설비 등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사업개발비 총 1,133개소, 모태펀드(35억원)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693억원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성장지원 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판로·성장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15→17개소)

○ 사회적기업 육성(균특): 1,034억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일자리창출 7,470명, 사회보험료 6,252명

○ 사회적기업 육성(제주): 49억원

- 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개발비 및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20개소, 일자리창출 308명, 사회보험료 130명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256,611	280,253	23,642	9.2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846	2,480	△366	△12.9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776	15,572	2,796	21.9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12,030	12,030	순증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9,131	25,696	△3,435	△11.8
○ 중장년층 취업지원	21,306	22,281	975	4.6
○ 사회적기업육성<일반회계>	21,745	24,621	2,876	13.2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64,402	69,259	4,857	7.5
○ 사회적기업육성<균특회계>	99,272	103,377	4,105	4.1
○ 사회적기업육성(제주)	5,133	4,937	△196	△3.8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⑥ 직업능력개발 사업

- ❖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지털·반도체 등 신산업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폴리텍 첨단산업 학과 신설·개편 추진
- ❖ 국가자격검정시스템 및 온라인 플랫폼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숙련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내일배움카드(일반): 5,188억원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①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② 일반고 3학년생·플랫폼 종사자 대상 훈련 실시, ③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및 심층 경력설계 지원
 - * ①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3.7만명)
 - ②일반고(6,800명, 전년동), 플랫폼종사자(16만명, 신규)
 - ③K-디지털 기초역량훈련(5만명),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0.5만명)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75억원

- 직업계고(직업교육, 55개 학과)와 신산업분야 민간훈련기관(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체계적 교육·훈련 과정 운영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3억원 ('23년 936명)

- 고용보험 미적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95억원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등 훈련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 훈련기관평가(35억원), 훈련과정심사(45억원), 훈련과정평가(21억원), 중앙부처 사업평가(3억원),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14억원)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551억원

- 자격검정 사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비용 지원
 - * 자격검정사업(1,302억원), 외국인고용관리사업(168억원), HRD확산 및 역량강화(52억원), 국제교류협력사업(8억원), 경상운영비(1,329억원) 및 자체수입(△1,308억원)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58억원

- ① NCS·SQF 구축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② NCS·SQF 활용으로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 NCS 개발(10직무) 및 개선(105직무), 컨설팅 지원(700개) 등
- HRD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숙련기술장려사업: 292억원**

- 최고의 숙련기술을 갖춘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비용 19억원,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 13억원, 기능경기대회 개최 114억원, 국제기능올림픽 40억원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57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지원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2,787억원**

- 학위과정 훈련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시설확충 등 한국폴리텍대학 운영비용 지원
- * 인력개발사업(1,070억원), 시설확충사업(223억원), 정보전산화사업비(38억원), 경상운영비(1,990억원) 및 자체수입(△534억원)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336억원**

- BTL 사업 정부지급금
- * 24개 캠퍼스 임차료 229억원, 운영비 107억원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802억원**

- 우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실천공학기술자 등 직업능력개발 전문가의 안정적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 * 직업훈련교원및HRD담당자양성(227억원), 직업훈련교원재·향상연수(236억원),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339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500억원**

- 기관운영비, 노후교육시설개보수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비용 지원
- * 교육환경인프라구축 등(86억원), 대학정보화사업(41억원), 연구학생지원비(27억원), 고용서비스역량강화센터 건립(17억), 첨단산업훈련콘텐츠(62억), 기관운영비(478억원) 및 자체수입(△214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32억원**

- 기숙사 및 공학관에 대한 BTL사업 정부지급금
- * 임차료(22억원) 및 운영비(10억원)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1,035,265	1,207,502	180,534	17.4
○ 내일배움카드(일반)	426,294	518,815	92,521	21.7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4,200	7,503	3,303	78.6
○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348	289	△59	△17.0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21,366	19,469	△1,897	△8.8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4,863	25,787	924	3.7
○ 숙련기술장려사업	28,261	29,153	892	3.2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40,841	155,099	14,258	10.1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5,739	5,732	△7	△0.1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224,142	278,661	54,519	24.3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29,232	33,565	4,333	14.8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86,560	80,226	△6,334	△7.3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40,251	50,035	9,784	24.3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168	3,168	-	-

7] 노사정책 사업

❖ 노사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반 마련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92억원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노사공동 이익증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지원
-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지원,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노사협력 체제 및 체계적 노사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현장의 상생의 노사관계 인식제고 및 상생협력 지원 등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92억원

- 노사관계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노사관계 문제해결 능력 제고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6억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 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노사발전재단지원: 231억원

-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사관계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 노사파트너십 증진, 차별개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지원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57,578	53,076	△4,502	△7.8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15,525	9,180	△6,345	△40.9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7,894	19,153	1,259	7.0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602	1,602	0	0.0
○ 노사발전재단 지원	22,557	23,141	584	2.6

8 근로조건 보호

-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 지원, 장시간 근로·고용차별 개선, 최저임금 준수 등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인프라 구축 추진

○ 근로조건개선지원: 167억원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권익지원관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대한 신속한 상담·청산지원 서비스 제공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장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
-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문제를 기업과 근로자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최저임금 홍보·「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식 확산과 준수율 향상 추진
-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근로자 권리보호의 기본이 되는 서면 근로계약의 현장 확산을 위한 홍보, 안내 및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등 추진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권리구제 등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직장 내 괴롭힘」제도 안내(교육 영상 제작·배포 등)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정착

○ 근로감독역량강화: 112억원

- 산업구조 변화·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 제도개선, 근로감독 디지털화 및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수사역량 강화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43억원

-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정규직 채용·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장 컨설팅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파견법 준수 등 지도·점검, 정책연구 등 실시
-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고용형태 자문기구, 실태조사, 전문가 협의체 등 실시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5.18. 공포, 11.19.시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 시행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6억원

- 퇴직연금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퇴직연금교육·인식개선 사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22.7.12.)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정 심의 위원회 운영 등

○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14억원

- ①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자회사·민간위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한 컨설팅, ②노사·노노 갈등 예방·조정 등 공공부문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 공무직위원회 운영: 2억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또는 기간제의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의 기준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공무직위원회 운영지원

* 운영기간 '20. 3. 27 ~ '23. 3. 31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34,224	34,331	107	0.3
○ 근로조건개선지원	15,818	16,675	857	5.4
○ 근로감독역량강화	11,059	11,175	116	1.0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4,228	4,288	60	1.4
○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719	585	△134	△18.6
○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	1,489	1,421	△68	△4.6
○ 공무직위원회 운영	911	187	△724	△79.4

9] 산업재해예방사업

- ❖ 체험·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신설·확대와 디지털증거분석 시설·장비 도입, 수사여건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역량 강화
-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등을 통해 광산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6억원

-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기대에 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확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과정 신설·확대
 - * 신규자 직무교육 2억원, 경력자 보수·심화교육 1억원, 교육여비 1억원 등 4억원
- (중대재해수사 과학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자료에 대한 수사가 요구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분석 장비 도입 및 분석실 설치
 - * 디지털 증거분석 장비 도입 23억원, 분석실 설치 2억원, 분석팀 역량강화 0.3억원 등 25억원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중대재해 수사여건 개선을 위해 수사지원차량, 영상녹화장비 설치 등 지원과 중대재해 예방조치 활용을 위한 체계적·구체적 중대재해 분석 시스템 마련
 - * 중대재해분석시스템 5억원, 조사실 및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6억원, 수사지원차량 구매 및 운영 5.5억원, 녹취록 작성 및 통번역 0.5억원 등 17억원

○ 진폐위로금: 864억원

-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해 및 유족위로금,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10.11월 이후 신규 진폐판정자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1,040일(1급)~215일(13급)분 지급]

○ 진폐건강진단: 15억원

- 광산업 종사 및 이직근로자에 대한 1·2차 진폐건강진단 비용 지원

○ 진폐근로자지원: 12억원

- 건강진단 부대비용(5억원), 기본경비(7억원) 등 진폐예방사업 추진 경비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90,955	93,761	2,806	3.1
○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0	4,629	4,629	순증
○ 진폐위로금 지급	88,106	86,415	△1,691	△1.9
○ 건강진단	1,589	1,510	△79	△5.0
○ 건강진단지원금	1,260	1,207	△53	△4.2

10 국제협력사업

- ❖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FTA 협상 참여 및 주요 FTA 발효에 따른 이행체제 구축
-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교류협력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제공하여 수원국의 자립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 ILO 분담금: 의무 분담금 130억원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7.9억원

- 한·OECD 협력지원(0.7억원),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0.5억원), 고용노동 통상협상 대책추진 및 협상 참석(0.8억원), 한-EU 및 한-미 FTA 협정 이행 대응 등(5.9억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99.6억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76.2억원),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1.1억원), 한·ILO 협력사업 (22.3억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46억원

- 외국인취업자관리(26.6억원),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19.9억원)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25,218	28,443	3,225	12.8
○ ILO 분담금(ODA)	12,088	13,044	956	7.9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793	793	-	-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7,555	9,961	2,406	31.8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4,782	4,645	△137	△2.9

11 고용노동행정지원

- ❖ 본부, 지방관서 및 위원회 운영과 업무환경개선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비용 지원

○ 정책연구개발(R&D): 8.1억원

- 정책대안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사업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29억원

- 행정쇄신·생활공감정책 추진,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정책고객 소통강화,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 등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89억원

- 정보시스템(노사누리, 전자민원 등) 구축·운영, 전산장비 구매 등

○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142억원

- 지방관서 청·관사 보증금 및 임차비용, 청사 유지보수 등

○ 노동위원회 운영: 127억원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5억원), 청사관리(26억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11억원), 정보화 운영(15억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33억원

- 회의체 운영비(11억원), 사무처 운영 및 인건비(11억원), 청사관리(10억원)

○ 고객상담센터운영: 245억원

-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및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230억원), 전산 시스템 개선*(9억원), 채팅 상담시스템 도입(6억원) 등

* 네트워크 방화벽 고도화 및 이중화, 전화상담 AP 고도화, 서버·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 제주도 이관업무 지원(균특회계): 237억원

- 사회적기업육성(49억원), 직업안정기관운영(10억원), 국민취업지원 제도(130억원), 내일배움카드(1억원), 제주노동위원회지원(14억원),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32억원)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95,617	114,836	19,219	20.1
○ 정책연구개발(R&D)	856	813	△43	△5.0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2,703	2,863	160	5.9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2,664	28,926	6,262	27.6
○ 노동위원회청사관리	1,995	2,582	587	29.4
○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15,063	14,170	△893	△5.9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7,892	7,528	△364	△4.6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1,125	1,125	-	-
○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1,965	1,453	△512	△26.1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3,355	3,291	△64	△1.9
○ 일자리위원회운영	7,054	3,936	△3,118	△44.2
○ 고객상담센터운영	7,149	24,478	17,329	242.4
○ 자치단체 이관 사업 지원(균특)	23,796	23,671	△125	△0.5

12 정부 내부 거래

❖ 고용보험사업,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전출금

○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3,000억원

- 모성보호지원: 3,000억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의 전출금: 200억원

- 산재보험사업 소요경비 지원: 63억원

- 산재예방사업 소요경비 지원: 137억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의 전출금: 0.82억원

< '23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예산 (A)	'23예산 (B)	증 감 (B-A)	%
계	1,318,300	320,082	△ 998,218	△ 75.7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300,000	300,000	0	0.0
○ 고용보험기금 전출(청년 및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800,000	0	△ 800,000	순감
○ 고용보험기금 전출(실업급여제정 이자비용 등 한시지원)	200,000	0	△ 200,000	순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0	0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예방사업)	12,000	13,700	1,700	14.2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 (임채기금 운영)	0	82	82	100.0

2. 고용보험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3년도 수입은 17조 9,832억원('22년 대비 3.6% 감소)

- 보험료 등 자체수입은 증가, 정부내부수입은 감소

* 여유자금회수(3조 6,968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1조 6,80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총 계(A+B+C)	22,704,851	21,679,991	△ 1,024,860	△ 4.5
수입계(A+B)	18,658,629	17,983,195	△ 675,434	△ 3.6
□ 자체수입(A)	16,058,629	17,683,195	1,624,566	10.1
○ 고용보험료	15,417,940	17,043,109	1,625,169	10.5
○ 재산수입·융자회수 등	640,689	640,086	△ 603	△ 0.1
□ 정부내부수입(B)	2,600,000	300,000	△ 2,300,000	△ 88.5
○ 일반회계 전입금	1,300,000	300,000	△ 1,000,000	△ 76.9
○ 공자기금 예수금	1,300,000	-	순감	순감
□ 여유자금회수(C)	4,046,222	3,696,796	△ 349,426	△ 8.6

□ 지 출

○ '23년도 지출은 17조 909억원('22년 대비 10.1% 감소)

* 여유자금운용(4조 5,891억원)을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1조 6,80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총 계(A+B+C)	22,704,851	21,679,991	△ 1,024,860	△ 4.5
지출계(A+B)	19,017,237	17,090,881	△ 1,926,356	△ 10.1
□ 지출(A)	18,840,543	16,910,684	△ 1,929,859	△ 10.2
○ 고용창출	2,876,332	898,314	△ 1,978,018	△ 68.8
○ 직업능력개발	1,599,850	1,754,335	154,485	9.7
○ 고용안전망확충	11,938,398	11,616,303	△ 322,095	△ 2.7
○ 고용평등증진	2,308,259	2,526,300	218,041	9.4
○ 고용노동행정지원	117,704	115,432	△ 2,272	△ 2.0
□ 정부내부지출(B)	176,694	180,197	3,503	2.0
□ 여유자금운용(C)	3,687,614	4,589,110	901,496	24.4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일자리 안전망 강화

- ❖ 실직시 생활안정을 도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등 지원
- ❖ 실업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11조 1,839억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①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활동기간에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② 지급

①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②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

③ '23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30,784원~61,568원(소정근로시간 비례)

○ 조기재취업수당: 3,867억원

-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112억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 실업크레딧지원: 345억원

- 일정 소득^① 이하인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②를 지원

①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이하

② 일반회계 25%, 고보기금 25%(고용부), 국민연금기금 25%(복지부), 자부담 25%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11,938,398	11,616,303	△ 322,095	△ 2.7
○ 구직급여	11,533,853	11,183,948	△ 349,905	△ 3.0
○ 조기재취업수당	365,635	386,659	21,024	5.7
○ 자영업자 실업급여	8,869	11,222	2,353	26.5
○ 실업크레딧 지원	30,041	34,474	4,433	14.8

②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 ❖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지원
- ❖ 청·장년 등 구직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제공과 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1,395억원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및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도입,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인원 및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천명)

구 분	'22년		'23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본예산)	지원 인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	159	686,888	30.3	139,504	
① 고용촉진장려금	32.2	125,954	13.8	64,771	○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22년) 32,186명 → ('23년) 13,802명
②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11.6	40,797	2.9	12,521	○ 근로시간단축, 교대제 개편 등으로 일자리 증가시 지원 * ('22년) 11,561명→('23년) 2,886명
③ 지역성장산업지원	0.2	1,164	0.2	1,164	○ 국내복귀기업 일자리 증가시 지원 * ('23년) 216명(전년수준)
④장년고용지원	4.9	21,859	4.5	20,001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22년) 4,924명→('23년) 4,546명
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110	495,900	8.9	40,050	○ '21년 청년 정규직 채용자 잔여지원 소요 반영('21년 한시) * ('22년) 110천명→('23년) 8.9천명
⑥시간선택제신규고용 지원	0.1	210	-	-	○ 사업 종료

※ 내역사업 예산에서 운영비 제외(합계에는 포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한시, 잔여사업비 반영): 2,294억원

-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시 1인당 年 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

-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30인~99인 사업장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가능)
- * 지원인원 : ('22년) 264천명 → ('23년) 144천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2,107억원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 지원,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 미스 매치 해소 지원('23년, 신규 2만명)

* '23년 지원대상: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만원+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청년지원 200+기업지원 200)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6억원

- 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장 신설·이전·증설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고용창출 활성화 지원

* 지원인원 : ('23년) 595명(전년수준)

○ 세대간상생고용지원('18년 종료, 잔여사업비 반영): 4억원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고용 노력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1인당 연 1,080만원 지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

* 지원인원 : ('22년) 440명 → ('23년) 126명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05억원

- 기능향상훈련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생활안정 지원(훈련장려금 지급) 및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훈련계획인원 : ('22년) 8,320명 → ('23년) 7,150명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23년) 17개소(전년수준)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2,139,570	595,095	△1,545,869	△72.3
○ 고용창출장려금	686,888	139,504	△547,384	△79.7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5,210	229,358	△765,852	△77.0
○ 청년내일채움공제	434,414	210,693	△223,721	△51.5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641	4,641	-	-
○ 고용장려금(융자)*	5,455	18	△5,437	△99.7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333	381	△952	△71.4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1,629	10,500	△1,129	△9.7

* 고용장려금(융자) 내역 중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48억원)'는 '22년 종료

③ 고용유지·안정 지원

- ❖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친화적 일자리 개편시 일자리의 질 제고 지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도모
- ❖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고용유지지원금: 1,974억원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휴업·휴직수당) 지원

* 유급휴업·휴직 지원 1,909억원, 무급휴업·휴직 지원 64억원

- (고용유지비용대부 채권관리비용) '21년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종료에 따라 상환업무지원을 위한 소송비, 운영비 등 채권관리비용(1.5억원)

*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20년 추경 신설, 한시사업)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869억

-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3년 평균 대비 초과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인원 : ('22년) 6천명 → ('23년) 53천명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고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인원 : ('22년) 3천명 → ('23년) 8천명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10억원)·장년근로시간단축(16억원)·임금피크제지원금(17억원) 등 종료사업은 잔여사업비 반영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22년) 1,577명 → ('23년) 850명

장년근로시간단축: ('22년) 380명 → ('23년) 200명

임금피크제지원: ('22년) 700명 → ('23년) 398명

○ 일터혁신지원: 280억원

-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조건 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맞춤형 전문컨설팅*과 노사가 상생하는 양질의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 전문컨설팅 지원: ('22년) 2,836건 → ('23년) 3,100건

↳ 전문컨설팅 분야 :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 개선, ⑤평가체계 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지원, ⑨안전일터 조성

**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23년) 10개소(전년수준)

○ 고용안정장려금: 1,995억원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육아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하여 고용안정을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인원 및 예산 내역 >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본예산)	지원 인원	금액	
고용안정장려금	53,616	185,191	60,379	199,518	
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3,268	24,079	16,250	29,594	○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 ('22년) 13,268명 → ('23년) 16,250명
② 정규직 전환 지원	5,050	15,331	4,040	12,307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지원 * ('22년) 5,050명 → ('23년) 4,040명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0,935	22,348	10,935	22,164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 간접 노무비 및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 ('23년) 10,935명(전년수준)
④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	24,363	123,433	29,154	135,453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 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지원 * ('22년) 24,363명 → ('23년) 29,154명

○ 모성보호육아지원: 2조 1,006억원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 ('23년) 71천명(전년수준)
 육아휴직급여 : ('22년) 128천명 → ('23년) 132천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2년) 9천명 → ('23년) 19천명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22년) 19천명 → ('23년) 19천명

○ 직장어린이집지원: 1,112억원

-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근로복지공단 위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 ('23년) 37개소(전년수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22년) 188개소 → ('23년) 75개소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22년) 545개소 → ('23년) 725개소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22년) 143개소 → ('23년) 134개소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2,906,317	2,723,674	△182,643	△6.3
○ 고용유지지원금	598,058	197,374	△400,684	△67.0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26,407	86,942	60,535	229.2
○ 일터혁신지원	25,720	28,004	2,284	8.9
○ 고용안정장려금	185,191	199,518	14,327	7.7
○ 모성보호육아지원	1,933,301	2,100,641	167,340	8.7
○ 직장어린이집지원	125,965	111,195	△14,770	△11.7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675	-	△11,675	순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

④ 직업능력개발 지원

- ❖ 급속한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민간·공공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이·전직 등을 지원
-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인상 등을 통한 훈련 품질 제고 및 국가 기간 산업 중심 인력 양성 추진
- ❖ 중소기업의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지원을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및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고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내일배움카드(고보): 8,873억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기술 직종, 국가적·전략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의 인력을 집중 양성
 - * 훈련계획인원 : ('22년) 64천명 → ('23년) 71천명
- (일반직종훈련) 실업자 및 재직자가 취·창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 훈련계획인원 : ('22년) 367천명 → ('23년) 388천명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 참여 지원
 - * 훈련계획인원 : ('22년) 25천명 → ('23년) 20천명

○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3,030억원

- (일반훈련)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업 규모별로 훈련에 소요된 비용 지원
 - *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23년) 1.3만개소
-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중소기업 훈련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실시 지원, 내부강사 육성, 학습조직화, 훈련 관련 행정 절차 지원 등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직무훈련 지원
 - * 훈련지원계획 : ('22년) 1,025개소 → ('23년) 1,920개소,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지역·산업별특화훈련) 지역 인력·훈련 수급조사를 토대로 재직자 훈련, 산업별 협·단체 주도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훈련 진행시 소요된 비용을 지원

* 훈련계획인원 : ('22년) 42천명 → ('23년) 47천명

○ 국가인적자원개발 권소사업지원: 1,445억원

-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소외지역 등에 훈련을 제공

* 대중소 공동훈련센터: ('22년) 174개소 → ('23년) 179개소

지역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23년) 60개소(전년수준)

K-digital Platform: ('22년) 20개소 → ('23년) 35개소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22년) 15개소 → ('23년) 20개소

○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 111억원

-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준 제시를 통하여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산업현장교수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련기술전수 등 실시

* 기업 기술 및 컨설팅지원: ('23년) 1,575개소(전년수준)

특성화고 기술전수: ('23년) 165개교(전년수준)

○ 외국인력고용지원: 25억원

- 외국인근로자 입국초기 취업적응지원,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훈련,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교육 등 실시

* 입국초기 취업적응지원: ('23년) 52,250명(전년수준)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훈련: ('23년) 3,325명(전년수준)

사용자교육: ('23년) 10,000명(전년수준)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992억원

- 학습근로자가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하며 배우는 훈련 인프라 지원

*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 ('22년) 7,500개소 → ('23년) 7,000개소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22년) 252개소 → ('23년) 217개소(통합형 43개소 포함)

일학습병행 훈련비 지원: ('22년) 20,355명 → ('23년) 23,257명

○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531억원

- 하이테크 과정 확대, 신산업분야 교육훈련 직종 개발 등 유망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하이테크과정 : ('22년) 1,230명 → ('23년) 1,530명

- 인구구조 변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 DX-Academy 구축(학과개편) : ('23년, 신규) 2개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535억원

-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로 생계비 대부

* 대부인원 : ('22년) 8,500명 → ('23년) 10,000명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1,599,850	1,754,335	154,485	9.7
○ 내일배움카드(고보)	798,296	887,312	89,016	11.2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74,429	303,030	28,601	10.4
○ 국가인적자원개발 권소사업지원	131,882	144,521	12,639	9.6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1,121	11,121	-	-
○ 외국인력고용지원	2,597	2,467	△130	△5.0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86,608	299,232	12,624	4.4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53,887	53,132	△755	△1.4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41,030	53,520	12,490	30.4

⑤ 고용서비스 및 고용정책 기반 구축 지원

- ❖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및 고용보험제도 운영
- ❖ 일자리·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시장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고용정책 수립 지원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53억원

-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및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36억원)를 일반회계로 이관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371억원

-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고용보험 등 제도안내 등을 위한 고객지원 센터 운영 및 보험사무대행 지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변경(정정)·이직확인 등에 관한 관리업무 수행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6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고용보험 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7억원

- 고용보험 적용·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36억원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예방·적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23년 기금운영비에서 사업비로 이관)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15억원

-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 고용보험시스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 일자리, 직업훈련 등의 고용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망 운영·관리 비용
-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련 법·제도 변경사항을 정보 시스템에 반영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71억원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대상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 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운영지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138,704	105,845	△ 33,072	△ 25.1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8,935	5,253	△ 3,682	△ 41.2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33,208	37,140	3,932	11.8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416	15,582	166	1.1
○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23,881	5,678	△ 18,203	△ 76.2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2,367)	3,567	3,567	순증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3,359	31,517	△ 1,842	△ 5.5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6,895	7,108	213	3.1
○ 고객상담센터지원**	17,010	-	△ 17,010	순감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사업은 기금운영비에서 사업비로 이관

** '고객상담센터지원'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

6 고용보험사업 운영 등

- ❖ 적용·징수 업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및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 연구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 상환

○ 기금운영비(고용보험 적용·징수 및 고용보험사업 운영 등): 1,154억원

-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 861억원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25억원),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128억원) 등

- 고용보험사업 운영비: 248억원

* 고용보험기금 내 기금운영, 고용안정·창출사업, 모성보호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기금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 고용보험연구개발: 40억원

- 자영업자 기금운영비: 5억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안내(4.2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1.2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802억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294,398	295,629	1,231	0.4
○ 기금운영비	117,704	115,432	△2,272	△1.9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176,694	180,197	3,503	2.0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3년도 순수입은 9조 7,956억원('22년 대비 7.0% 증가)
- 여유자금회수(7조 2,306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19조 562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18,140,713	19,056,193	915,480	5.0
☐ 순수입	9,150,501	9,795,610	645,109	7.0
○ 산재보험료	8,319,828	8,709,368	389,540	4.7
○ 이자·융자회수 등	812,373	1,066,242	253,869	31.3
○ 일반회계 전입금	18,300	20,000	1,700	9.3
☐ 여유자금 회수 등	8,990,212	9,260,583	270,371	3.0

☐ 지 출

-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23년도 기금 지출은 총 9조 6,406억원으로 '22년보다 7,561억원(8.5%) 증가
-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은 1,593억원(1.7%)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18,140,713	19,056,193	915,480	5.0
☐ 총지출	8,884,420	9,640,569	756,149	8.5
○ 산재보험사업	7,373,606	8,015,070	641,464	8.7
○ 산재예방사업	1,092,165	1,198,698	106,533	9.8
○ 고용노동행정지원	418,649	426,801	8,152	1.9
☐ 여유자금 운용 등	9,256,293	9,415,624	159,331	1.7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산재보험사업

-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등 보호에 기여
- ❖ 재활서비스 지원강화로 산재노동자 직업·사회복귀 촉진 및 산재병원 인프라 확충 지원

<산재보험급여>

○ 요양급여: 1조 7,185억원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치료비 등 지급
* ('22년) 299,855명 → ('23년) 357,947명

○ 휴업급여: 2조 570억원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22년) 158,769명 → ('23년) 183,923명

○ 장해급여: 2조 5,174억원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14급 판정자에게 지급
* 연금: 329일분(1급)~138일분(7급), 일시금: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22년) 97,665명 → ('23년) 105,450명

○ 유족급여: 9,328억원

- 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22년) 34,096명 → ('23년) 35,820명

○ 간병급여: 510억원

-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 상사: 전문 44,760원, 가족/기타 41,170원, 수사: 전문 29,840원, 가족/기타 27,450원
* ('22년) 5,040명 → ('23년) 4,936명

○ 상병보상연금: 1,388억원

- 2년 이상 요양중인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 제3급 해당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 329일분 ~ 257일분 지급

* ('22년) 3,467명 → ('23년) 3,336명

○ 장례비: 428억원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22년 최고 16,775천원, 최저 12,082천원

* ('22년) 2,874명 → ('23년) 3,039명

○ 직업재활급여: 273억원

- 요양종결 이후 산재보험법상 장애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등을 위해 지급

* ('22년) 3,276명 → ('23년) 2,471명

○ 진폐연금: 3,067억원

- 요양하거나 진폐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노동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최저임금의 60%)과 진폐장해연금(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평균임금의 2일 ~ 11일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 진폐유족연금은 사망전 진폐보상연금 금액을 지급(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2년) 13,721명 → ('23년) 13,674명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 산재보험급여	7,146,284	7,792,317	646,033	9.0
○ 요양급여	1,614,365	1,718,504	104,139	6.5
○ 휴업급여	1,802,706	2,056,969	254,263	14.1
○ 장애급여	2,284,648	2,517,387	232,739	10.2
○ 유족급여	861,764	932,827	71,063	8.2
○ 간병급여	56,029	50,991	△5,038	△9.0
○ 상병보상연금	140,479	138,786	△1,693	△1.2
○ 장례비	40,075	42,827	2,752	6.9
○ 직업재활급여	31,700	27,307	△4,393	△13.9
○ 진폐연금	314,518	306,719	△7,799	△2.5

<산재근로자 재활 및 의료사업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7억원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84,688명, 600억원)
- 직업훈련 지원(46명, 1억원), 직장복귀 지원(27억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8,087명, 25억원)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435명, 5억원), 맞춤서비스지원(77억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1,427명, 32억원)

○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지원: 104억원

- 연구기관지원(2개소, 67억원), 케어센터지원(2개소, 37억원)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2억원

- 의료기관 평가(3억원)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12억원)
-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및 인프라 구축(10억원)
 - * 재해조사 인력 400명에게 재해조사 장비지원 및 업무활동비 등 지원
- 출퇴근 재해 보호지원(67억원)

○ 산재병원지원: 324억원

- 산재병원지원(재활전문센터 및 산재병원 본부 운영비 지원, 90억원)
-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의료장비현대화 38억원, 노후안전시설개보수 52억원)
- 울산산재병원신축지원(공사비 144억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151,413	128,712	△ 22,701	△ 15.0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654	76,654	-	-
○ 연구기관및케어센터지원	10,275	10,446	171	1.7
○ 요양관리	9,664	9,181	△ 483	△ 5.0
○ 산재병원지원	54,820	32,431	△ 22,389	△ 40.8

<산재보험사업의 위탁운영 및 지원>

○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456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징수위탁 지원(178억원)
 - * 인건비(115억원), 사업비(59억원), 경비(3억원)
-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278억원)
 - * 사업장 안내 등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75억원), 콜센터 운영(75억원), 보험사무대행지원(128억원)

○ 산재보험시설 건립: 177억원

- 경인지역본부 재건축(171억원), 인재개발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정해제에 따른 복구비용 등(6억원)

○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150억원

-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운영지원(120억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시스템 구축(23억원), 산재급여시스템 재구축 ISP(2억원) 특고 전속성 기준 폐지에 따른 시스템 개선(5억)

○ 산재보험 위탁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2,554억원

- 근로복지공단 직원 인건비(2,072억원)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355억원)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지원(110억원)
- 청사임차보증금 지원(17억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313,819	333,706	19,887	6.3
○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41,996	45,536	3,540	8.4
○ 산재보험시설 건립	7,148	17,714	10,566	147.8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	11,021	15,047	4,026	36.5
○ 산재보험 위탁 운영경비	253,654	255,409	1,755	0.7

② 산업재해예방 사업

- ❖ 고위험 영역 커버리지 강화 및 자율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 ❖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건강 커버리지 확대
- ❖ 산재예방사업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안전보건재정지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5,070억원(증 561억원)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 : 1,197억원
 - * (제조·서비스) 4,000개소, 342억원 / (건설업) 8,900개소, 715억원 / (화재·폭발·폭염 등 위험요인 지원) 2,200개소, 140억원
- (안전투자 혁신사업)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 : 3,199억원
 - * (위험기계·기구) 4,348→2,081대, 970억원/(위험공정·장비) 1,509→2,229개소, 2,229억원
- (건강일터조성지원)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의 기본이 되는 공학적 설비(국소배기장치)와 휴게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 381억원
 - * (국소배기장치) 373개소, 158억원/(휴게시설) 6,588개소, 223억원
-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를 발굴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보급·확산 : 250억원
 - *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2,890대(963개소), 250억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수행경비) 43억원
 - * 사후관리 위탁수수료, 자료제작, 사업수행여비, 사업성과 평가용역 등 사업수행경비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450,853	506,974	56,121	12.4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50,853	506,974	56,121	12.4

<안전보건기술지원>

○ 업종별재해예방: 1,315억원(중 401억원)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283억원)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93→75천회, 137억원),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400→380명, 125억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525→950개소, 7억원) 등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29만회, 450억원)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42억원)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3,600건, 10억원), 안전보건종합진단(150개소, 노후산단 연구용역 1식, 15억원) 등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539억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28,000건, 26억원), 공생협력프로그램 지원(500개소, 99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16,000개소, 382억원) 등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79억원(중 4백만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50,630건, 39억원)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6,795건, 30억원)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1,050건, 2억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33,700건, 7억원)

○ 유해작업환경개선: 822억원(중 28억원)

-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725억원)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74천→88천개소, 321억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53만→67만명, 320억원), 직종별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47,000명/4,600개소, 77억원) 등

-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34억원)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5,000개소, 7억원),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12,000건, 14억원) 등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71,590회, 63억원)

○ 근로자건강보호: 439억원(증 21억원)

- 근로자건강센터(208억원)
 - * 건강센터 23개소, 분소 21→22개소, 트라우마센터 13→14개소
- 산업보건이슈 대응(16,000개소, 34억원)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74건, 160개소, 29억원)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1,050종, 117건, 29억원)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11억원)
- 감정노동자 보호사업(1,000개소, 4억원)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285만→228만개, 15억원)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33억원)
 - * 유해작업환경개선 → 근로자건강보호로 사업이관
- 직업성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77억원)
 - *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6개소), 직업성 질병 DB구축(3억)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4억원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255백만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150백만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220,819	265,860	45,041	20.4
○ 업종별재해예방	91,386	131,530	40,144	43.9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7,855	7,859	4	0.1
○ 유해작업환경개선	79,348	82,176	2,828	3.6
○ 근로자건강보호	41,825	43,890	2,065	4.9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405	405	0	0

<안전보건문화확산>

○ 안전보건문화정착: 328억원(증 35억원)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195억원)

* 안전보건교육(425→561천명, 84억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13만명, 65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턴트 육성(1,000명, 10억원) 등

- 전문교육과정운영(41억원)

* 집합교육(12,220명, 34억원), 이러닝교육(41,000명, 7억원)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70억원)

* 안전문화사업(1식, 11억원), 홍보사업(1식, 59억원)

- 민간재해예방활동지원(67과제, 23억원)

○ 산재예방시설 건립: 210억원(감 20억원)

-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순감 144억원)

- 중부 안전체험교육장 시설 개선(3차년도 90억원, 증 42억원)

-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타당성조사(순증 2억원)

- 익산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4차년도 118억원, 증 80억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52,357	53,873	1,516	2.9
○ 안전보건문화정착	29,351	32,847	3,496	11.9
○ 산재예방시설건립	23,006	21,026	△1,980	△8.6

<안전보건기반조성>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89억원(증 29억원)

- 안전보건연구사업(50억원)

- * 안전경영정책연구(18과제, 14억원), 산업안전연구(5과제, 6억원), 직업건강연구(12과제, 11억원), 직업환경연구(6과제, 12억원), 화학물질연구(9과제, 3억원), 산업안전분야 국제 학술지 발간(1식, 3억원)

- 국제협력사업(9억원)

- * 국제협력(69회, 7억원), 해외정보관리(159회/종, 2억원)

- 산업재해통계(30억원)

- * 통계사업(10식, 8억원), 제7차 근로환경조사(1식, 순증 22억원)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68억원(증 9억원)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68억원)

- * 안전보건정보시스템 운영(11→12식, 68억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11,808	15,663	3,855	32.6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5,944	8,843	2,899	48.8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5,864	6,820	956	16.3

<산재예방위탁운영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비: 1,633억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 1,472억원(증 60억원)
 - * (증원인건비) '22년 정기(66명, 1,751백만원), '22년 수시(30명 1,720백만원), '23년 정기(2명, 61백만원)
 - * (공통처우개선분) 2,461백만원(1.7%)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 154억원(감 3억원)
 - * 임차료 및 관리비(증 1억원), 최저임금소요(증 1억원), 완료소요(감 3억원), 경상경비 공통절감분(감 2억원)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6억원)
 - * 경상경비 공통절감분(감 3억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157,856	163,297	5,441	3.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비	157,856	163,297	5,441	3.4

③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용자

- ❖ 산재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도모
- ❖ 유해위험설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 용자: 156억원

-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 등 대부
 -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2,000만원 한도, 연리 1.25%, 지원대상 1,696명
 - * 물량: ('22년) 1,696명 → ('23년) 1,696명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1억원

- 산재근로자 중 창업희망자에게 점포임대 지원('19년 신규지원중단)
 - * 1인당 1.5억원 한도, 최장 6년간 연리 2%
 - * 물량: 신규지원대상 0명 (기존 지원자(2명)의 이전계약 및 임대료 상향지원)

○ 산재예방시설용자: 3,563억원

-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설비·기계기구 및 작업환경 개선비용 용자 지원
 - *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2,020개소, 전년 동)
 -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1.5%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372,072	372,072	0	0.0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창업점포지원 통합편성)	15,744	15,744	0	0.0
○ 산재예방시설용자	356,328	356,328	0	0.0

④ 산재보험및예방사업 운영비

- ❖ 기금관리비 및 산재보험·산재예방제도 운영 지원
- ❖ 산재보험 및 예방제도 관련 연구용역

○ 인건비: 32억원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산업안전정책 전문위원 인건비
 - * 처우개선 2.3%, 고용부담금 부족분 반영
 - ** 산재재심사위원회 산재심사지원관(기간제) 운영 인건비 6억 반영

○ 기타경비: 43억원

- 산재보험기금운용,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기본운영경비 등
 - * '21년 기금운용 평가결과(탁월)에 따른 인센티브 1억원(1년 한시) 반영
 - ** 산재재심사위원회 산재심사지원관(기간제) 채용 및 심리회의 증회(46회) 경비 2억 반영

○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6억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관련 연구용역비 등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7,139	8,095	956	13.4
○ 기금관리비 인건비	127	136	9	7.1
○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154	762	608	394.8
○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204	2,325	121	5.5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73	381	8	2.1
○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882	1,042	△160	△18.1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799	2,849	50	1.8
○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600	600	0	0.0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3년도 순수입은 7,912억원('22년도 대비 0.03% 감소)

- 여유자금회수 등을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1조 9,005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1,874,576	1,900,474	25,898	1.4
☐ 순수입	791,434	791,186	△ 248	△ 0.03
○ 자체수입	783,403	779,186	△ 4,217	△ 0.5
- 법정부담금	756,898	747,106	△ 9,792	△ 1.3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5,479	16,165	686	4.4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1,026	15,915	4,889	44.3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8,031	12,000	3,969	49.4
☐ 여유자금 회수 등	1,083,142	1,109,288	26,146	2.4

☐ 지 출

○ '23년도 총지출은 8,478억원('22년도 대비 10.6% 증가)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4,52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1,874,576	1,900,474	25,898	1.4
☐ 총지출	766,268	847,783	81,515	10.6
○ 경상사업비	687,413	766,464	79,051	11.5
- 장애인고용장려금	262,422	297,747	35,325	13.5
- 장애인고용 및 취업지원	271,023	300,497	29,474	10.9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등	153,968	168,220	14,252	9.3
○ 기금운영비	78,855	81,319	2,464	3.1
☐ 정부내부지출	500,320	600,000	99,680	19.9
☐ 여유자금운용	607,988	452,691	△ 155,297	△ 25.5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2,977억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3.1%(민간기관) ~ 3.6%(공공기관)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5~90만원 장려금 지급

* 장애인고용장려금: ('22년) 584천명, 2,545억원, → ('23년) 611천명, 2,816억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에 장애인 신규 고용 인센티브 부여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2년) 2,860명, 80억원 → ('23년) 2,860천명, 161억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330억원

- 근로지원인 지원(▲지원단가 확대: 시간당 13,786 → 14,475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지원 강화

* 근로지원인: ('22년) 10,000명, 204,713백만원 → ('23년) 10,500명, 227,025백만원

- 중증장애인의 직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작업지도원 등을 선임·배치하는 경우 월 1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23년 9억원)

- 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통근용승합차 등 지원('23년 35억원)

- 장애인 근로자 고충상담 및 조정 역할 수행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센터(장애인근로자의 애로·고충문제 중재 및 조정자 역할 수행) 지원('23년 17억원, 6개소)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69억원

- 출퇴근비용 지원(월 5만원) 대상 확대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 지원

* ('22년) 26억원,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3,850명) → ('23년) 69억원, 중위소득 50%이하 및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15,440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449억원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등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 ('23년) 일반·자회사형 120(+30), 사회적 경제기업형 25, 컨소시엄형 2(-3)개소

○ 보조공학기기지원: 192억원

-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확대

* ('22년) 1.3만점 16,660백만원 → ('23년) 1.4만점 19,248백만원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3억원

-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등 융자
- 기존 대하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 (~'22년) 1인당 1억원, 사업주당 15억원(3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 ('23년) 1인당 1억원, 사업주당 15억원(1년거치 4년상환, 이차보전 이율 3.38%)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537,825	602,128	64,303	12.0
○ 장애인고용장려금	262,422	297,747	35,325	13.5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10,671	232,998	22,327	10.6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2,610	6,948	4,338	166.2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36,437	44,883	8,446	23.2
○ 보조공학기기지원	16,660	19,248	2,588	15.5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9,025	304	△8,721	△96.6

② 맞춤형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취업지원: 335억원

- 장애친화경영 이행수준 자가진단시스템 구축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유도

* ('22년) ISP 수립 1백만원 → ('23년) 온라인사이트 개설 및 5천개소 진단 예정 15억원

- 중증장애인에 대해 현장훈련과 고용 후 적응지도하는 지원고용(6천명) 및 중증. 장년 장애인 인턴 경험 및 정규직 전환지원을 위한 장애인인턴제* 지원

* ('22년) 600명, 인턴지원금(월 80만원, 6개월)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월 65만원, 6개월) →

('23년) 700명(증 100명), 인턴지원금(월 100만원, 6개월)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월 80만원, 6개월)

- 장애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재학 중 체계적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기회 제공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7천명)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10억원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22년) 11,000명 20,600백만원 → ('23년) 11,000명 21,018백만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23억원

- 발달장애인 등 취업의욕 고취에 동료 장애인의 지원이 효과적인 것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22년) 운영비(875천원), 참여자수당(4.5천원) → ('23년) 운영비(890천원), 참여자수당 5천원)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전환지원: 37억원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지원

* (대상) 800명, (지원)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등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57,742	60,551	2,809	4.9
○ 장애인취업지원	30,630	33,488	2,858	9.3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0,600	21,018	418	2.0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2,768	2,301	△467	△16.9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전환지원	3,744	3,744	-	-

③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및 인식개선 지원 등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공공·민간훈련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연구·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19억원

-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양성훈련 등 훈련과정 지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총사업비 1,136억원)
 - * '23년 164억원(공사비 158억원, 시설부대경비 6억원)
- 기업의 훈련수요에 대응한 디지털맞춤훈련센터 운영(3개소) 및 확대(3개소)
- 다양한 직무체험·훈련을 위한 가상훈련시스템 구축하여 발달 장애인 직업 적응 능력 제고('23년 10개소)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64억원) 및 공공훈련(3억원) 지원 및 시각장애인 대상 정보화기기 지원('23년 7개소)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77억원

- 장애인 기능경기(지방·전국, 발달) 개최 지원

* '23년 출제위원 수당인상(10→30만원) 및 지방·발달대회 위탁사업비 인건비 22명 신설

- 국제대회 참가* 및 입상자에 따른 기능장려금 지급

* '23년 3월 프랑스(메스) 개최 예정

○ 장애인고용연구: 45억원

- 장애인고용연구(31과제) 및 장애인고용통계조사(4종)* 실시 등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의 삶과 일자리 실태조사

- 발달장애인 조기노화 관련 연구과제 실시('23년 3억원)

-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23년 5억원)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48억원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 의무 이행 지원('23년 12,000개소)

-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신모델 제시를 위한 장애인 체육팀 운영('23년 2억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87,320	98,970	11,650	13.3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70,597	81,906	11,309	16.0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7,766	7,705	△61	△0.8
○ 장애인고용연구	3,982	4,544	562	14.1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4,975	4,815	△160	△3.2

④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및 기금관리 운용 지원

○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48억원

- 장애인고용전산망 및 전산장비 등의 관리·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망분리 구축('23년 9억원)

○ 기금관리 운용 지원: 813억원

- 공단 인건비 및 장애인기금 사업운영비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획(A)	'23계획(B)	증 감	
			(B-A)	%
계	83,381	86,134	2,753	3.3
○ 장애인고용정보화	4,526	4,815	289	6.4
○ 기금관리(운영비)	78,855	81,319	2,464	3.1

5.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3년도 순수입은 6,531억원('22년 보다 12.1% 증가)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9,169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총 계	964,628	916,927	△ 47,701	△ 4.9
☐ 순수입	582,724	653,115	70,391	12.1
○ 사업주부담금	389,427	405,304	15,877	4.1
○ 변제금·이자·공탁금 회수 등	193,297	247,729	54,432	28.2
○ 일반회계전입금	0	82	82	순증
☐ 여유자금 회수	381,904	263,812	△ 118,092	△ 30.9

☐ 지 출

○ '23년도 총지출은 6,357억원('22년 보다 9.3% 감소)

- 여유자금 운용 등 규모는 2,813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총 계	964,628	916,927	△ 47,701	△ 4.9
☐ 총지출	700,816	635,650	△ 65,166	△ 9.3
○ 대지급금 지급	643,089	559,155	△ 83,934	△ 13.1
○ 무료법률구조지원	10,948	10,386	△ 562	△ 5.1
○ 대지급금 조력지원	94	52	△ 42	△ 44.7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30,710	48,333	17,623	57.4
○ 임채기금 운영비	15,975	17,724	1,749	10.9
☐ 여유자금 운용 등	263,812	281,277	17,465	6.6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 ❖ 체불근로자의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조력비용 지원
- ❖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체불청산 용자 지원, 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5,592억원

-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개편 및 체불임금 감소 추세로 도산 대지급금 감소세 지속 예상 반영

* ('22년) 687억원(8,226명) → ('23년) 580억원(7,075명)

- (간이대지급금) 용자제도 개편 및 체불임금 감소 추세로 간이대 지급금 감소 예상 반영

* ('22년) 5,744억원(120,623명) → ('23년) 5,012억원(96,841명)

○ 무료법률 구조지원: 104억원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22년) 38,875건 → ('23년) 34,078건

↳ 최근 3년간 평균소송건수에 간이대지급금 절차간소화에 따른 감소 및 체불근로자 감소율 반영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임금채불관련 소송(민사, 소액심판, 보존, 강제집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일체

↳ 변호사 비용: 158,144원(건당) + 소송비용: 146,647원(건당) = 304,791원(단가 합계)

○ 대지급금 조력지원: 0.52억원

- 1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2년) 도산(불)인정 93건, 대지급금신청 219명 →
('23년) 도산(불)인정 50건, 대지급금신청 132명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483억원

-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강화 등을 위한 융자제도 개편('23년 시행 예정) 반영

* ('22년) 총 14,153명(사업주 5,360명, 근로자 8,793명) →
('23년) 총 7,970명(사업주 5,499명, 근로자 2,471명)

* 융자금액: 사업주(총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근로자(1천만원)
↳ 이자율: 사업주(2.2~3.7%), 근로자(1.5%)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684,841	617,926	△ 66,915	△ 9.8
○ 대지급금 지급	643,089	559,155	△ 83,934	△ 13.1
○ 무료법률구조 지원	10,948	10,386	△ 562	△ 5.1
○ 대지급금조력지원	94	52	△ 42	△ 44.7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30,710	48,333	17,623	57.4

②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비

❖ 기금관리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지원

○ 인건비: 137억원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위탁에 따른 인건비

○ 기타경비: 40억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경비, 근로복지공단 업무위탁에 따른 기타경비 및 정보화 경비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15,975	17,724	1,749	10.9
○ 기금관리비(인건비)	86	98	12	14.0
○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658	758	100	15.2
○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11,664	12,881	1,217	10.4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5	14	△1	△6.7
○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484	344	△140	△28.9
○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2,727	3,288	561	20.6
○ 임금채권정보화(정보화경비)	341	341	0	0.0

6.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3년도 순수입은 2,685억원('22년 대비 △19.8%)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4,121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합 계	433,426	412,089	△ 21,337	△ 4.9
☐ 순수입	334,636	268,471	△ 66,165	△ 19.8
○ 용자금 회수	134,400	154,618	20,218	15.0
○ 재산수입	4,471	5,981	1,510	33.8
○ 경상이전수입 및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7,230	18,756	1,526	8.9
○ 정부내부수입	178,535	89,116	△ 89,419	△ 50.1
☐ 여유자금 회수	98,790	143,618	44,828	45.4

☐ 지 출

- '23년도 총지출은 2,417억원 ('22년 대비 △13.9%)
 -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964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433,426	412,089	△ 21,337	△ 4.9
☐ 총지출	280,649	241,739	△ 38,910	△ 13.9
○ 사업비	258,528	221,220	△ 37,308	△ 14.4
○ 기금운영비	22,121	20,519	△ 1,602	△ 7.2
☐ 정부내부지출	19,751	73,922	54,171	274.3
○ 공자기금 예탁	-	50,000	50,000	순증
○ 계정간 전출	18,777	23,716	4,939	26.3
○ 복권기금 반환	974	206	△ 768	△ 78.9
☐ 여유자금운용 등	133,026	96,428	△ 36,598	△ 27.5
○ 여유자금 운용	133,026	96,428	△ 36,598	△ 27.5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근로자 복지사업

- ❖ 저소득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하고 근로의욕 고취
- ❖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적 조사·연구
- ❖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등을 통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

○ 생활안정자금(융자): 1,500억원

-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 ('22년) 35,765명 → ('23년) 26,554명

○ 근로자복지지원: 16억원

- 문화예술제(4억원): 4개 분야(미술·음악·연극·미술) 예술제 개최
- 기업복지활성화지원(12억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제공

○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2억원

-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해 퇴직연금정책 수립에 기여 및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

○ 퇴직연금 사업운영: 156억원

- 계약형퇴직연금제도 운영(23억원) :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133억원) : 중소영세사업장이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고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 근로복지기금 지원: 155억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소기업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재정지원

○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48억원

- 근로복지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지원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230,185	187,670	△ 42,515	△ 18.5
○ 생활안정자금(용자)	199,051	150,000	△ 49,051	△ 24.6
○ 근로자복지지원	1,646	1,564	△ 82	△ 5.0
○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	231	231	순증
○ 퇴직연금사업운영	9,188	15,624	6,436	70.0
○ 근로복지기금 지원	16,469	15,459	△ 1,010	△ 6.1
○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3,831	4,792	961	25.1

2 신용보증 사업

- ❖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이 생활안정자금(용자) 등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336억원

- 고용노동부 실시 정책자금 용자 대상자 중 신용보증 신청하는 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이내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대상 용자사업: 근로기금(생활안정자금(용자)), 고보기금(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기금(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2계 획(A)	'23계 획(B)	증 감	
			(B-A)	%
계	28,343	33,550	5,207	18.4
○ 신용보증대위변제	28,343	33,550	5,207	18.4

